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現 정부 및 대통령실 조직체계에 맞춰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, 現 정부 기조에 맞춰 분야별 회의를 개편하고,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회의와 전략경제협력 특명전권대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, 부의장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분야별 회의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, 관계기관 등이 수행하는 조사·연구 경비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. 23.~2026. 1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획예산처장관
3. 대통령정책실장

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,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부의장) 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위촉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

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와 분야별 회의의 통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회의지원단을 관장한다.

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.

1. 성장경제회의
3. 미래기획회의
5. 전략경제협력회의

제3조의5의 제목 “(자문회의지원단)”을 “(자문회의지원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과 부의장”으로, “자문회의지원단 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자문회의지원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및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지원단”을 각각 “자문회의지원단과 전략경제협력지원단”으로 한다.

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전략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관련 전략적 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략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자문회의는 필요시 분야별회의 논의에 관한 세부적·기술적 지원을 위해 분야별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,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·연구의 전문성, 난이도 등 성격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「국민경제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항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u>1. 고용노동부장관</u> 2. (생략) <u>3.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</u>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1. 기획예산처장관</u> 2. (현행과 같음) <u>3. 대통령정책실장</u>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2조의3(부의장)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은 자문회의의 위촉위원을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</u> <u>② 부의장은 자문회의와 분야별회의의 통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회의지원단을 관장한다.</u>
<u>제2조의3 (생략)</u> 제3조의2(분야별회의의 종류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1. 거시금융회의</u> 2. (생략) <u>3. 혁신경제회의</u>	<u>제2조의4 (현행 제2조의3과 같음)</u> 제3조의2(분야별회의의 종류 등) ① ----- -----. <u>1. 성장경제회의</u> 2. (현행과 같음) <u>3. 미래기획회의</u>

4. 미래경제회의

<신 설>

5. (생 략)

6. 경제정책회의

7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3조의5(자문회의지원단) ① 자
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
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
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
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
둔다.

<신 설>

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
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소
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
· 단체 또는 연구소 · 기업의 임
원 · 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
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
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

<삭 제>

5. 전략경제협력회의

4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<삭 제>

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5(자문회의지원단 등) ①
----- 운영과 부의장 -----

----- 자문회의지원
단-----
----.

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전략
경제협력회의의 운영 및 전략적
경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
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략
경제협력지원단을 둔다.

③ ----- 자문회의지원단
과 전략경제협력지원단-----

-----.

④ -----
--- 자문회의지원단과 전략경

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 제4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등이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<u>제협력지원단</u>----- ----- -----. 제4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① (현행과 같음) ②자문회의는 필요시 분야별회의 논의에 관한 세부적·기술적 지원을 위해 분야별회의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, 정책자문단 등이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·연구의 전문성, 난이도 등 성격을 고려하여 그 경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--	---